

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3월 2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)

● 법률 제19227호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가목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”을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제35조제3항제1호”를 각각 “제35조제4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2호에”를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2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4항제2호에”로 한다.

제35조제5항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·중앙회장과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은”을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·중앙회장은”으로 한다.

제36조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”을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조합중앙회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